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환공무직관리규정

제정 2018. 3. 2.
상근인력관리규정 전부개정 2021. 9.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기능적인 업무 및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던 용역근로자에서 전환된 공무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채용절차, 근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 시행당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에서 공단 소속으로 전환 고용된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채용방법) ① 전환공무직 근로자의 채용방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 평가자의 업무능력, 응용력, 이해력, 근무태도, 동료애,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근속기간 적용의 예외) 이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실제 소속인 용역업체에서 공단으로의 고용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완전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의 근속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기산한다.

제5조(보수 등) 전환공무직의 보수, 평가급, 복리후생(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관리규정 제6장의 복리후생을 말한다)은 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보칙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효력기간) 이 규정은 공무직관리규정 제17조(해고) 및 제18조(당연퇴

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 그 시점을 기하여 자동 폐지된다.

부 칙<2018. 3. 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정수조정 및 용역업체 계약연장 거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2018년 1월 1일 기간제근로자로 우선 전환 채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환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1. 9. 28.>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